

I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

□ 이전지역인재 범위

- 본사 이전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기준을 따름

□ 대구·경북 소재 이전지역 학교의 범위

가. 대구·경북 소재 이전지역 학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2)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나. 대구·경북 소재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그 외의 이전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 가.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나.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다.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인재에 해당
- 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비해당
- 마.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바.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비해당
- 사.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비해당

II

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제외)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을 따름

□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 그 외의 비수도권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가.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예정)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나.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다.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라.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

별첨**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첨

이의신청서(양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수험번호		성명	
	지원분야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 정보는 반드시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전자우편 또는 연락처를 통해 이루어 지므로 신청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금번 한국부동산원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별첨**채용예정 직급상당 경력·자격 기준****□ 인사관리요강 [별표1] 채용예정 직급상당 경력·자격 기준**

구 분	내 용
종합직 1급	1.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합직 2급	1.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합직 3급	1.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합직 4급	1.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5급 내지 6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감정평가사 등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경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종합직 5급	1.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6급 내지 7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3. 석사학위 및 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경력,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주) 1.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상 법인의 직급은 부동산원 직급과 동일·유사한 경우에 한하며, 상이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직급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무원 경력의 직급기준은 해당 직급에서의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안내문

□ 신청 시 유의사항

- [참고]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참고]의 편의 제공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편의제공 내용 입력란에 ①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해당채용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다만, 임산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아래 3가지)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각명기)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장애유형	예시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참고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 **필기시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제공 내용	증빙서류	비고	
지체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기존 3급 1,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원본)	의사진단서 (원본)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	기존 5급 2호, 6급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2~6급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장애유형과 등급을 확인

□ 면접전형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제공 내용
지체장애	상지	전담도우미 지원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 등
	하지	전담도우미지원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등
뇌병변장애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 등
시각장애		전담도우미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PT면접 진행 시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 등
청각장애		보조공학기기(인공와우 등) 착용 허용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등

※ 발표 준비시간 1.5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종합병원 이상)

별첨

한국부동산원 본사 및 지사 안내

분야(근무지)*	근무지	소재지
전국	본사, 전국 지사	-
본사	본사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서울지역본부	서울강남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서울중부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1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의정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43
	고양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춘천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6
	강릉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87
충청지역본부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정로 138
	홍성지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34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호남지역본부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순천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96
	전주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군산지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5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동부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부산서부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81번길 10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4

분야(근무지)*	근무지	소재지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안동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68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1		
전국 공익보상부 /사업소	서울 지역본부	수도권보상지원단 소송지원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공익보상1부 GTX-A사업소 신안산선사업소 GTX-C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서울 지역본부	공익보상2부 보상1사업소 보상2사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공익보상3부 보상1사업소 보상2사업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52	
		공익보상4부 보상1사업소 보상2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90	
	충청 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보상1사업소 보상2사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량로 3번길 36	
		호남 지역본부	공익보상부 함평사업소 제주사업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바람길 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부산경남 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대구경북 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 지역본부, 전국 공익보상부/사업소의 경우 각 분야별 근무지 및 본사 순환근무이며, 향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근무지 및 소재지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음